

# 부동산거래질서

## 교란행위를

목격하셨다면  
신고센터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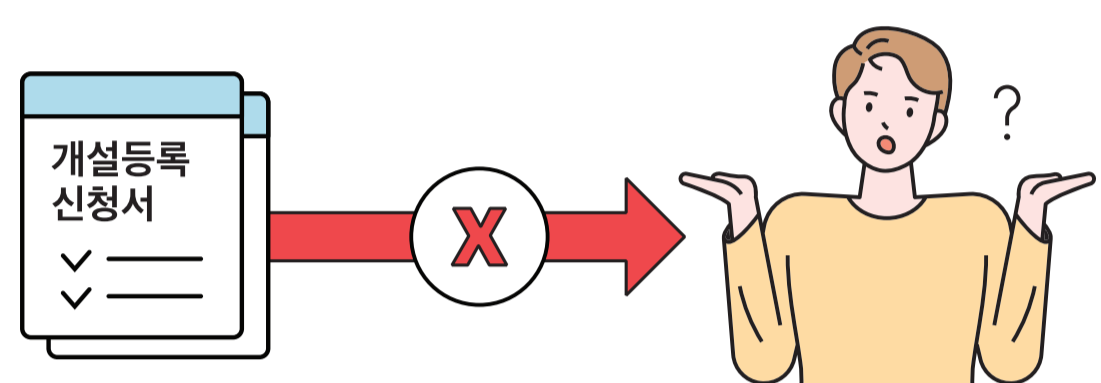
새로운시작

新GO!

### 주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?

#### 공인중개사법

##### 1. 무등록 중개



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,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한 행위

##### 2. 자격증 · 등록증 대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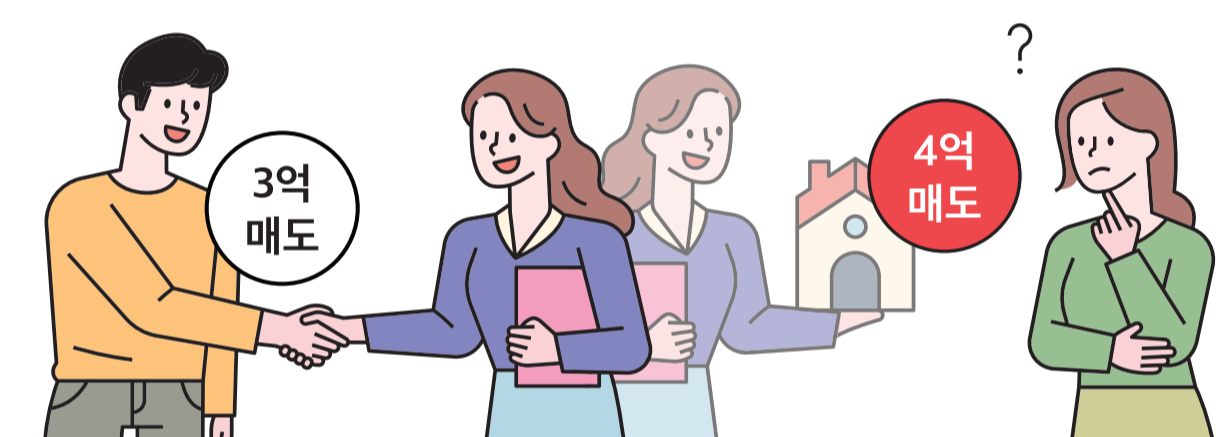
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

##### 3. 중개보수 초과수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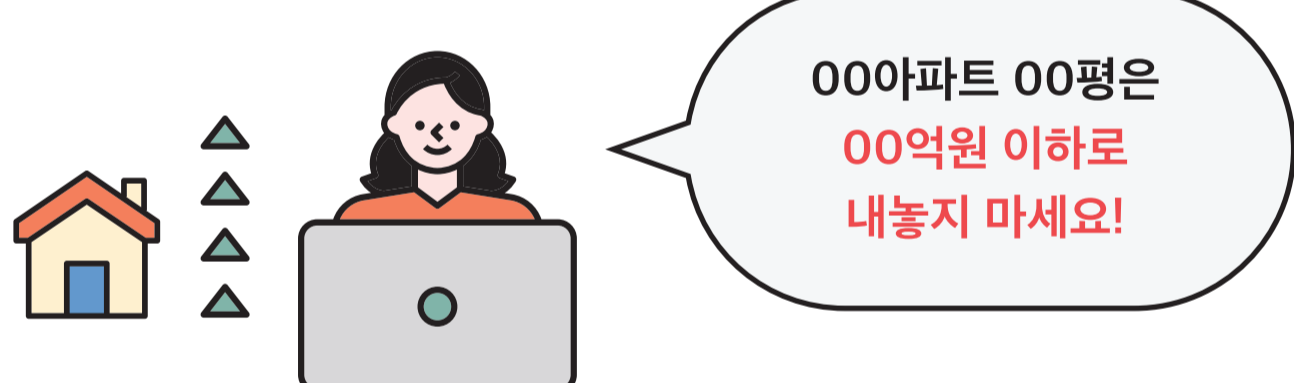
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정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컨설팅 비용 등의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요구하는 행위

##### 4. 중개사의 거짓언행



중개물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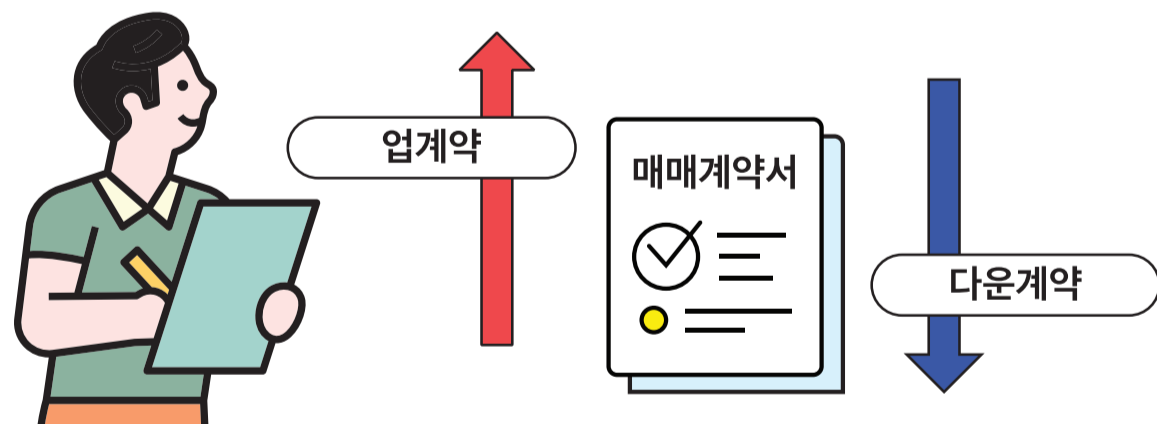
##### 5. 집값담합



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

#### 거래신고법

##### 6. 업 · 다운 계약신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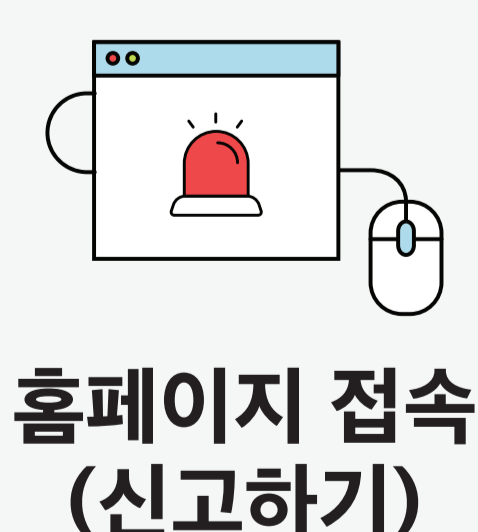
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

##### 7. 허위거래 계약신고

전용면적(m2)	계약일	해제여부	해제일자	거래금액
84	2X.3.1	0	2X.10.1	3.8억원
84	2X.2.1			3.1억원
84	2X.1.1			3.0억원

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

#### 신고방법



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접속하셔서

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

“클릭”



콜센터 1644-9782

www.budongsan24.kr

